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북 정읍 가금농가(육용오리)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1. 관련 :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11553(2022.12.31.)호.
2. 전북 정읍 가금농가(육용오리)에서 정밀검사 중 고병원성 AI 의사환축(H5형 확인)이 확인됨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방역조치

□ AI 방역대책상황실·대책본부 운영(공통)

-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 협회 및 전국 지자체는 AI 방역 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의사환축 발생 농장 소재 시·도 및 시·군·구(전라북도)

- 검출 농장에 대한 조치
 - 해당 농장의 사육가금 등 고병원성 AI 감수성 동물은 즉시 살처분 명령 조치
 - 농장주(가족 및 직원 포함), 차량, 가금 및 물품에 대한 이동제한 실시
- 의사환축 발생 농장 및 역학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및 출입자·출입차량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후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여 농식품부·검역본부 및 관련 시·도, 시·군·구에 보고(통보)
- 차단방역 강화조치
 - 의사환축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 설정
 - * 해당농장 중심 반경 10k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신속한 예찰
 -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장(가금 사육 전업농)에 대해 '23.1.4일까지 정밀 검사(PCR)를 완료하고(관리·보호지역은 '23.1.3일까지), 검출농장 반경 3km 이내(관리·보호지역) 가금농가는 전화예찰을 즉시(12.31일까지) 완료 하고, 방역대 해제 시까지 매일 실시
 - * 방역대 내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 현황 파악 후 우리 부 제출 및 임상예찰 실시
- 살처분 범위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9695('22.12.10.)에 의거하여 설정*하고, 해당 농장에 살처분 명령서[붙임 2]를 즉시 사전 발부

- * 미호강 유역 시군(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 :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가금축종 살처분, 발생농장 반경 500 ~ 1km 지역은 육계 외 전 가금축종 살처분
- * 전남 나주·영암·무안·함평
 - :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가금축종 살처분, 오리 사육농장에서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 2km 내 오리 사육농장 살처분
- * 그 외 지역
 - :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가금축종 살처분, 오리 사육농장에서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 1km 내 오리 사육농장 살처분
- 방역대가 타 지자체와 겹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
-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
 - * 시·군,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
- 살처분·매몰 등 현장방역조치 대비 인력 및 장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소와 사전 협의하여 항바이러스제 확보
- 방역지역 설정에 따른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장소 설치 등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 즉시 시행
-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정밀검사(PCR*)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
 -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차량이 출입한 농장의 가금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
 - ** 시·군,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
-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축산관련시설*은 즉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운영 재개
 - *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왕겨업체, 식용란선별포장업(GP), 부화장, 분뇨·비료업체 등
 -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차량이 출입한 축산시설의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실시
- ※ 정읍 의사환축 발생농장 인근 태인제2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및 축산관련시설(과거 14일 이내)에 대해 예찰 및 정밀검사(PCR) 실시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 운영 및 방역관련자 비상대기 조치
 - 전국 일시 이동중지 등 명령 발령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점검
 - 방역대 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는 수매·도태 적극 추진
 -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이행점검

□ 전라북도 외 지자체

- 의사환축 발생 지역 접경 지대는 이동통제 초소 설치
- 의사환축 발생 방역대가 관내 설정된 지자체는 해당 지역 내 소재 가금농가

에 대한 이동제한 및 신속한 예찰 추진

→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장(닭·오리·거위·기러기 등 가금 사육 전업농)에 대해 '23.1.4일까지 정밀검사(PCR) 완료(관리·보호지역은 '23.1.3일까지)

- 방역대 내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 현황 파악 후 우리 부 제출 및 임상예찰 실시
 - 살처분 범위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9695('22.12.10.)호에 의거하여 설정* 하고, 해당 농장에 살처분 명령서[붙임 3]를 즉시 사전발부
-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정밀 검사(PCR)*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
 -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차량이 출입한 농장의 가금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
 - ** 시·군,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
-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축산관련시설*은 즉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운영 재개
 - *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왕겨업체, 식용란선별포장업(GP), 부화장, 분뇨·비료업체 등
 -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차량이 출입한 축산 시설의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실시
- ※ 정읍 의사환축 발생농장 인근 태인제2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및 축산관련시설(과거 14일 이내)에 대해 예찰 및 정밀검사(PCR) 실시
- 관할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신속하게 예찰 및 임상검사 실시
- 관할 소규모 농가 및 방역취약농가에 대해 전화,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방역 실태 지도·홍보·점검
 - 방역대 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는 수매·도태 적극 추진
 -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이행점검
- 전국 일시 이동중지 등 명령 발령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점검

□ 농림축산검역본부

- 중앙역학조사반을 급파,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의무 위반사항 정밀 조사
 - 역학조사 시 농장 사육환경·방역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부 및 해당 지자체에 공유하고,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지자체에 이첩
 - KAHIS 축산차량 출입정보 등을 활용해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분석' 결과를 우리 부 및 지자체에 신속히 제공하여 사전방역 조치에 활용토록 조치
- 기동방역기구 파견
 - 대상 지역: 전북 정읍
 - 주요 임무: 방역기술 지원, 살처분 인력 AI 방역 교육, 소독장비 운영,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및 사체처리 작업 등 기술자문, 현장 소독 및 통제

초소 운영실태 등 점검 및 방역조치 등

- 방역조치 대상 축산차량, 가금 사육농장 및 축산시설을 확정하고, 각 대상별 이동제한 기간을 명시하여 우리 부에 즉시 보고 및 해당 지자체 통보
 - 지자체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역학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소독·정밀검사 대상 가금농장·시설·차량에 대한 검사 이행 후 그 실적을 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일일 송부
- 축산차량 이동현황 및 방역지역 현황 등 보고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 운영 철저(비상연락망 구축 등)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역 인력 및 물자(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

□ 국방부·경찰청

- 시·군·구에서 현장 방역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의사환축 발생 농장의 가축 및 생산물의 농장 밖 이동을 금지하고 외부인 및 차량 등의 진입 제한
 -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소독·기록 관리 철저
- 의사환축 발생 농장의 진입로 소독(생석회 살포 등)
- 의사환축 발생 지자체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강화
 - * 검출농장 반경 3~10km 내(예찰지역) 가금농가는 12.31.까지 전화예찰을 완료하고, 방역대 해제 시까지 매일 실시

□ 농협경제지주

- 의사환축 발생지역 내 가금농가 소독 실시(공동방재단)
 - 방역대 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의사환축 발생시군 내 모든 가금농가로 확대하여 실시
- 가금류에 대한 일제 검사 등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료채취 인력 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

□ 관련 협회(단체 포함) 및 소속 농가

-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단체의 긴급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
 -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에 대비하여 가금 사료 확보 등 대비 철저 홍보
- 전국적인 축산농가 모임, 행사 등 금지
-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 등을 대상으로 및 매일 임상검사 실시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 9060)토록 전파

-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 및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이동통제 적극 협조 홍보
- 금번 의사환축 발생지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가금 농가 방문 자제 및 방문이 불가피할 경우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나. 방역지역 내 특별 방역강화 조치(방역대 해제 시까지)

□ 보호지역 내 방역 강화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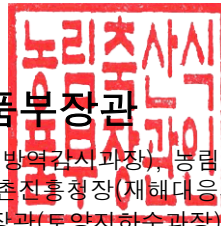
- 해당 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는 5일 간격 정밀검사 실시
- 위험농장에 대해서는 소독·통제초소 설치·운영
- 보호지역 내 전 가금 축종(전업규모) 대상 수의전담관 지정, 폐사율·산란율 매일 모니터일 등 특별관리
- 전용 소독차량 배치, 가금 사육농가 진출입로 및 인근 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등 취약지역 매일 2회 소독
- 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해 방역대 내 이동제한 준수 여부 매일 점검
- 보호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미실시 육계·육용오리 농장은 조기 출하 독려
- 가금농장 4단계 소독 매일 실시 지도 및 점검

□ 예찰지역 내 위험 축종에 대한 AI 예찰·검사 강화

- 육용오리 농장은 사육기간 중 4회(24일령, 31일령, 38일령, 출하전 검사) AI 정밀검사 실시
- 종오리·산란계 농장은 시도 수의직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일 폐사율, 산란율 변동사항을 예찰
 -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농가에 방문하여 임상검사 및 사양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정밀검사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 조치

-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살처분 명령서 준수사항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행정안전부장관(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보건연구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대응팀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연구팀장), 국립생물자원관장(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장), 질병관리청장(신종감염병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경찰청장(치안상황관리관),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한국관광공사사장,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국방부장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남권질병대응센터(감염병대응과장), 경북권질병대응센터(감염병대응과장), 수도권질병대응센터(감염병대응과장), 충청권질병대응센터(감염병대응과장), 호남권질병대응센터(감염병대응과장), 검역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축산경영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울산광역시

주무관 조류인플루엔자 전결 2022. 12. 3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 **홍기성**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2. 12. 31.) 접수
10873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7 팩스번호 044-8639210 / hjcho324@korea.kr / 대국민 공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